

뇌물방지작업반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2004년 10월 12~13일간 2004년도 제4차회의를 개최하여 이탈리아, 스위스에 대한 2단계 심사, 각국의 협약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이탈리아에 대한 2단계 심사 결과

이탈리아에 대한 2단계 심사의 주심사국으로 활동한 영국과 독일은 Concussione 규정의 OECD 뇌물방지협약과 불합치, Istigazione Alla Corruzione 조항의 문제점, 법인의 책임, 뇌물수익의 몰수규정의 미적용 문제, 자금세탁 관련 법인에 대한 행정처벌, 공소시효(최대 7년반)의 연장 필요성, Campione지역의 관리문제, 회계감사문제 등 10여 개의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제의하였으나 시간부족으로 일부 이슈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이탈리아는 두 건의 협약 적용사례가 있는데, Telecom Serbia의 경우는 증거불충분으로 종료되었으며, Enelpower의 경우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금번 심사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쟁점 중의 하나는 Concussione 조항이다. 이는 이탈리아 형법 제31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 협박을 통해 뇌물을 요구함에 따라 뇌물제공자가 부득이 뇌

물을 제공하게 된 경우,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만 처벌하고 뇌물제공자는 피해자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규정은 OECD뇌물방지협약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뇌물사건(Foreign Bribery)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쟁점은 Istigazione Alla Corruzione 조항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뇌물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뇌물수령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는 협약에 규정된 Foreign Bribery상 공무원이 뇌물을 수령하지 않을지라도 뇌물을 공여, 제의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다루기 위해 이탈리아는 형법 제322조(Istigazione Alla Corruzione)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조항도 공무원이 뇌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커버되지만, 공무원이 뇌물 제의 또는 약속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뇌물의 규모, 공무원의 재산 등을 감안하여 심각한 경우에만 커버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뇌물 공여미수죄(attempted bribery)에서 커버된다는 이탈리아측 주장에 따라 추후 동 건 적용 실태를 추가 검토(follow-up)하기로 하였다.

또한 Campione는 스위스 영토내에 위치

한 enclave로서 이탈리아 관할이지만, 카지노 산업이 주요 수입원으로서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고 스위스은행을 이용하는 특수지역으로서 협약이행 취약지역이 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다수 관련 법률의 개정·제정을 촉구하는 등 비교적 심각한 내용의 권고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이중 중요한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지실사단 방문시 뇌물공여사례(bribery case)를 실제로 담당할 밀라노 소재 검사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탈리아측이 이를 들어주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명
-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
- 민법상 허위회계에 관한 조항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
-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 자금세탁 방지 관련, 형사처벌 및 법인책임을 도입하는 법률의 신속한 채택을 촉구
- Tax amnesty programmes 시행과 관련하여 뇌물위장프로그램으로 악용될 소지에 특별한 관심을 촉구
- Concussione 조항을 Foreign Bribery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 Foreign Bribery에 대해서는 궁극적 공소시효의 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스위스에 대한 2단계 심사 결과

스위스는 벨기에와 헝가리를 주심사국으로 하여 심사를 받았다. 법인의 책임, 회계감사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을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없고, 권고사항도 비교적 경미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쟁점 없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스위스의 협약이행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인책임과 관련, 스위스 형법(100-quarter 조)이 자금세탁이나 뇌물죄에 대하여 자연인의 책임에 법인의 책임을 추가하여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책임을 부과할 만한 결함(defective organization)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입증책임이 법인에 있지 않고, 검찰측에 있기 때문에 협약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었으나, 추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적용결과를 보아가며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스위스는 Foreign Bribery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벌금(최대 500만 프랑) 외에 다른 행정처벌이 병과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에 따라 권고사항에 포함되었다.

이들간의 작업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채택한 스위스에 대한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의 뇌물행위 인지시 관계당국에 신고의무를 연방법률에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국공무원 뇌물제공죄의 성격 및 세금 측면을 적시하여 세무당국에 회람하고 의심스러운 사실을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규정을 재검토할 것
- 부정행위 의혹 발견시 신고의무를 회계감사인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조달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추진 관련, Foreign Bribery로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항 도입을 검토할 것

3. 모든 협약당사국의 협약이행 현황 점검(Tour de Table)

WGB정기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당사국들은 협약의 이행 현황을 발표하게 되어 있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과 관련, 각국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 및 규정, 국제뇌물사건에 관한 기소 여부 및 판결내용, 사법 공조 내용 등을 발표함으로써 회원국간 정보공유, 협약이행실태 점검 및 협약이행을 위해 추가적 제도보완 또는 조치의 필요유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은 자국내 또는 자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 기소 및 판결동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Mark Pieth 의장은 당사국이 사건동향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 해당국별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제기하면서 최근 동향을 문의하고, 적절한 답변이 없을 경우 상세동향을 2004년 12월 회의시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4건), 미국,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3건), 포르투갈, 스웨덴 등이 질문을 받았다.

한편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협약에 대한 홍보, 뇌물방지노력, 법률제정동향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프랑스는 민간기업의 행동수칙을 포함하여 4개의 권고문을 채택하였고, 이탈리아는 최근 협약홍보를 위해 전 재외공관에 OECD뇌물방지협약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설명하였고 아울러 여타 협약당사국 대사관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발표하였다. 슬로베니아는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률이 최근 위헌판결을 받아 1년 안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당사국들은 자국과 관련된 반부패국제회의 참가동향 및 주요 결과에 대한 홍보성격의 발표를 하였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는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OAS반부패국제회의의 결과를 언급하였고, 미국과 칠레는 2004년 9월 25~26일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APEC반부패전문가회의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국을 포함한 3개국이 공동으로 2005년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시 반부패선언문 채택을 목표로 노력 중임을 언급하였다. 미국은 APEC 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반부패이슈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APEC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국제적 반부패노력에 끌어들이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등은 최근 반부패 관련 국제협약의 비준사실을 발표

하였다. 한편 미국은 미국 반부패관행법(FCPA)을 위반한 네덜란드 기업인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하여 네덜란드가 수년 전부터 협조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거론하면서 네덜란드측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하였다.

4. 의장단 성격의 운영그룹회의 결과

WGB회의가 개최되기 전날(2월 11일) 개최된 운영그룹(Mangement Group)회의에서는 2단계 심사 개선방안, 사무국 예산, 비회원국 협력방안(outreach), 뇌물요청문제, 국제투명성기구(TI)와의 비공식 협의,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와의 협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중 2단계 심사와 관련, 이탈리아, 일본이 G-7국가로서 매우 소극적 태도로 대응하여 협약의 효율적 이행이라는 본래 목표가 위협받고 있으며, 따라서 외부로써 OECD뇌물방지협약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2단계 심사 후속조치와 관련, 단순한 구두보고 및 서면보고에 그치지 말고, 서면보고사항에 대하여 주심사국들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5. 뇌물요청문제에 관한 BIAC 주최 비공식회의 결과

OECD의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는

2004년 10월 14일 뇌물요청문제에 관한 비공식회의(Joint Task Force Bribe Solicitation)를 개최하였다.

가. 회의 개최배경

BIAC측은 다국적기업들이 외국공무원들로부터 뇌물요청을 받을 경우 뇌물을 줄 수도 없고, 지속적인 영업 필요성을 감안, 검찰당국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뇌물방지차원에서 뇌물요청정보를 수집하는 국제기구 또는 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OECD는 BIAC측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해하면서도, 이러한 기관을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점도 예상됨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오다가 지난 2004년 6월 뇌물작업반(WGB)회의시 BIAC측 주도하에 비공식 태스크포스 설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번 회의가 개최되었다. 따라서 금번 회의는 BIAC측 주도로 개최되고 OECD 회원국 정부 및 뇌물방지작업반, 사무국 대표 등 30여 명은 개인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나. 주요 논의내용

BIAC측 참석자들은 뇌물요청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되는 금번 태스크포스(TF)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궁극적으로 뇌물요청정보신고센터의 설립을 위해 태스크포스의 주

요 역할(Terms of Reference)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희망하고, OECD 회원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OECD 뇌물방지협약이 뇌물의 공급 측면만을 다루고 수요 측면을 다루지 않는 결함이 있음을 감안, 뇌물의 수요 측면을 다루기 위한 장치, 특히 soft mechanism이 필요하며,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informal process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OECD 회원국 정부측 참석자들은 뇌물요청문제에 대한 이해증진차원에서 금번 TF에 개인자격으로 참석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TF가 뇌물요청정보신고센터 설립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BIAC측이 준비한 TF의 주요 역할에 관한 초안내용의 문제점, 특히 뇌물문제를 수출통제체제와 비교하면서 안보이슈(security issue)와 유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뇌물요청정보신고기관 설치를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일단 정보수집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개진하였다.

따라서 회의를 주재한 BIAC의 뇌물담당팀장은 뇌물요청정보수집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려움을 감안,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뇌물요청문제에 대하여 각국이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OECD 회원국 정부 및

민간기업에 공히 설문서를 배포할 예정임을 밝히고 동 설문서 답변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측 참석인사들은 특별히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6. 평가

이탈리아에 대한 2단계 심사와 관련, 현지실사단이 국제뇌물사건을 실제로 담당할 밀라노 소재 검사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탈리아측이 이를 들어주지 않은 사실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었고, 동 사실이 권고문에도 포함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강하였다. WGB회의가 개최되기 전날(10월 11일), 작업반의 의장단에 해당되는 운영그룹회의에서는 G7국가의 하나인 이탈리아가 협약 이행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감안,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기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탈리아에 대하여 지난 번 룩셈부르크 2단계 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ollow-up 여부에 따라 현지실사의 재 실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스위스에 대한 2단계 심사와 관련, 스위스가 국제뇌물사건은 한 건도 없고 주심사국의 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작업반 논의시에도 이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특징이었다.

모든 협약당사국의 이행 현황 점검시 협약에 대한 국내홍보를 포함하여 Foreign Bribery 예방조치, 반부패 관련 국제협력동향, 사건에 대한 조사, 기소, 판결동향에 대해

여 발표하게 되어 있음을 감안, 이번처럼 본부(특히 법무부, 부패방지위원회) 관계관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관련 사항을 발표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이행에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뇌물요청문제와 관련, 개도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주재국의 뇌물요청을 접하고 이를 주재국 경찰

에 신고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뇌물을 제공하기도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상을 파악하고, 만약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능한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정수 주OECD대표부 참사관

jsdoo83@mofat.go.kr】